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자동연금화 방안

강 성 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10.27.

목 차

I. 논의배경/목적

II. 퇴직연금 급여 현황 및 평가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화와 시사점

IV.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논의배경/목적

논의배경

-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의 시급성 vs. **노후준비 강화**의 필요성
 - 국민연금 소진시점 : 2060년 ('13년 추계) → 2057년 ('18년 추계) → 2055년 ('23년 추계) => **10년간 5년** 당겨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 : 60% ('07년) → 50% ('08년) → 40% ('28년) => **미래 노인세대** 적용(현 근로세대)
 -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을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에서 최고 수준 ('13년 48.4% → '21년 37.7%, 10.7%p↓)
- (구조개혁&다층) **현행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준비 불가** → **공사연금의 다층적 역할 분담 필요 : 퇴직연금**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와 노후준비 갭

구분	필요최소노후생활비		필요적정노후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월생활비 (만원)	198.7	124.3	277	177.3 만 원
필요 소득대체율 (%) : A	51.9	32.5	72.3	46.2% (월 소득 383만원 대비)
실질 소득대체율 (%) : B				30~35% (국민+기초)
노후준비 갭 (%p) : A-B				약 Δ11~16%p

주 : 월생활비, 최소노후생활비 산출 값은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보장패널자료 참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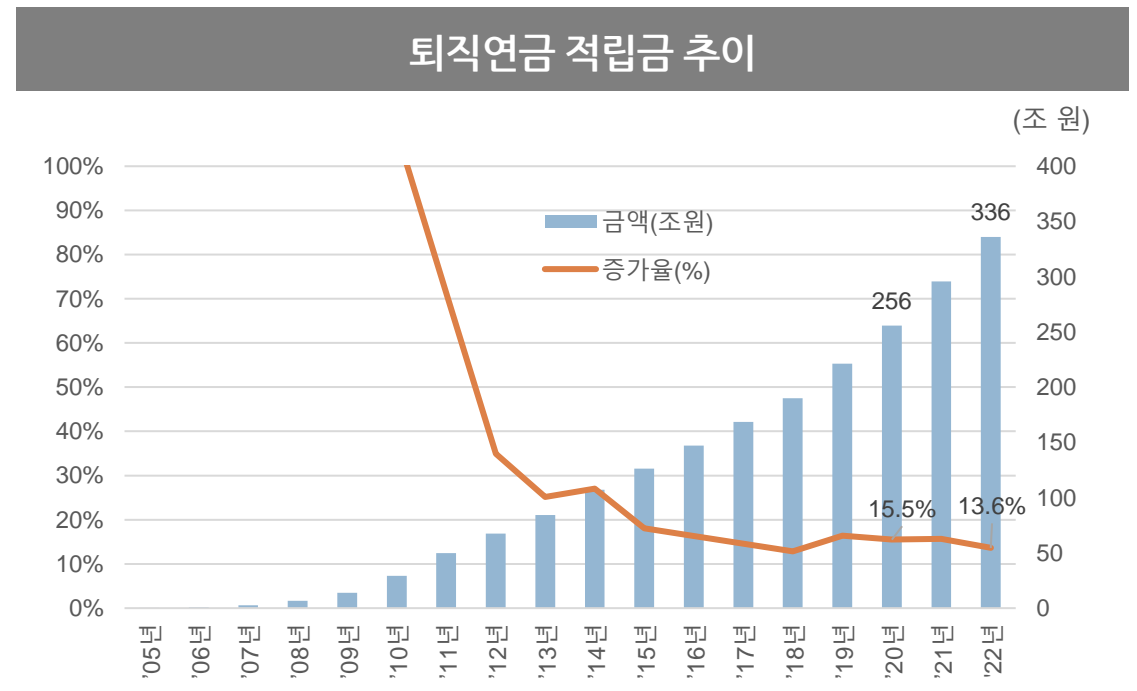
퇴직연금 급여 현황 및 평가

1. 퇴직연금 구성 및 적립금
2. 퇴직연금 급여 현황
3. 퇴직연금 평가

퇴직연금 구성 및 적립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구성) ① 퇴직급여, ② 본인부담(추가 가입), ③ 투자수익
 - 퇴직금은 사외적립, 사용자 부담의 퇴직급여임 (IRP 가입 통해 추가가입 가능)
- (적립금 추이) 퇴직연금 **336 조원** (연 40조 원 ↑) → 향후 더 증가, 상당한 노후자산 활용 가능성

퇴직연금 구성		
구분	재원	비고
① 퇴직급여	사용자부담(8.3%)	대상자: 1,200만명 (퇴직연금 700만명)
② 본인부담	본인기여(IRP+DC)	납부자: 130만명
③ 투자수익	(①+②) × 투자수익률	-
적립금(①+②+③)	퇴직연금 : 336조원 퇴직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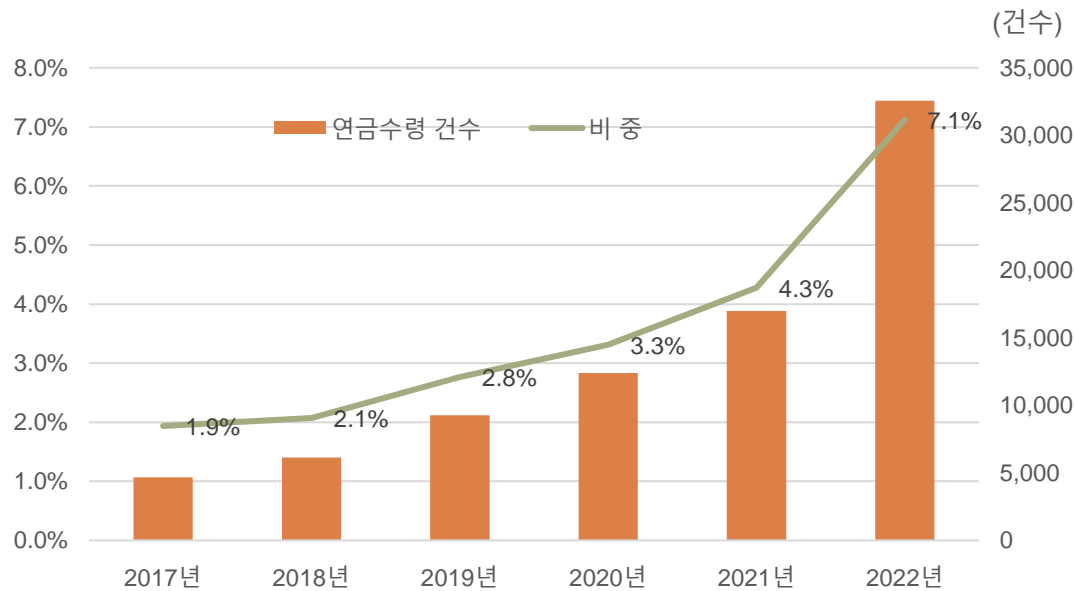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퇴직연금 급여 현황

- (연금화 낮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시금 수령
 - 연금수령 비율(계좌 기준)이 1.9%(’17년) → 7.1%(’22년)로 증가 추세지만, 대부분 일시금 수령(’22년 92.9%)
 - 연금 수령자 vs. 일시금 수령자 평균 적립금은 1억 5천 5백만 원 vs. 2천 5백만 원 (6배 차이)

퇴직연금 연금화 추이 (계좌 수)



자료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퇴직연금 수령 금액 (단위: 억 원)

기준연도	구분	연금	일시금	전체
2017년	총수령액	10,756	39,039	49,795
	계좌당 금액	2.30	0.16	0.21
2018년	총수령액	12,643	46,359	59,002
	계좌당 금액	2.06	0.16	0.20
2019년	총수령액	18,104	52,921	71,025
	계좌당 금액	1.95	0.16	0.21
2020년	총수령액	23,565	59,483	83,048
	계좌당 금액	1.90	0.16	0.22
2021년	총수령액	32,028	61,398	93,426
	계좌당 금액	1.89	0.16	0.24
2022년	총수령액	50,639	104,474	155,113
	계좌당 금액	1.55	0.25	0.34

주: 2019년 수급현황은 제공되지 않아 2018년과 2020년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각 년도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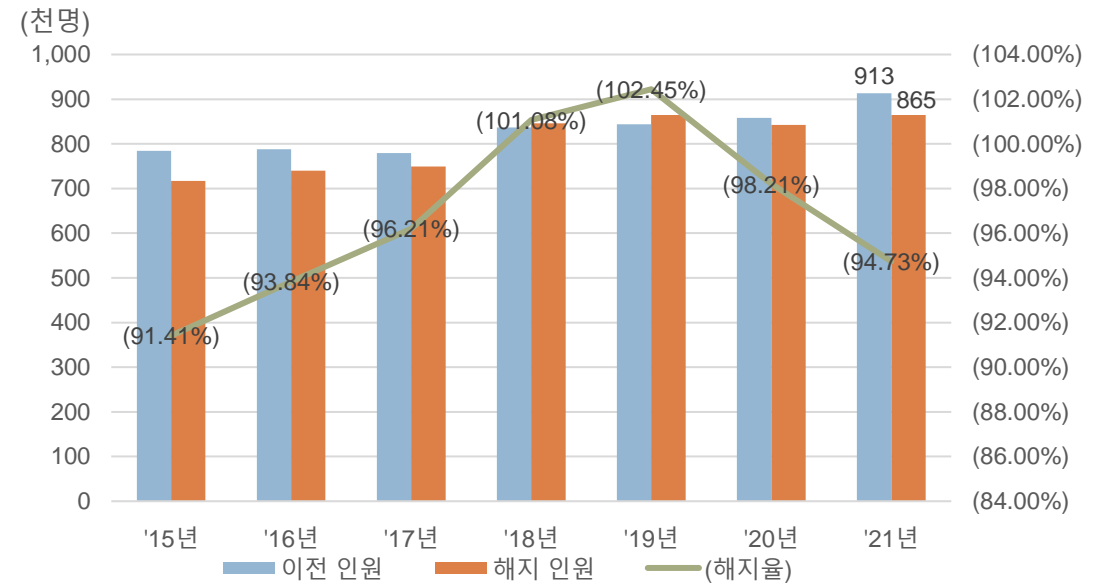
퇴직연금 급여 현황

- (원인 1) **중도인출**, 이직 시 IRP 계좌 이관 후 대부분 **해지** (해지율 '21년 94.7%) → **적립금 없거나, 적음**
 - 주로 30, 40대에서 주택구입, 주거임차 등 주거관련으로 중도인출 (연간 2조 누수 됨)
 - 평균근속기간 6.7년('19년) → 생애 4~5회 이직이 예상 (연간 10조 누수 됨)

성/연령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단위: 명, 억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합계	4,256 (7.8%)	24,682 (45.1%)	16,942 (31.0%)	7,584 (13.9%)	1,252 (2.3%)	54,716 (100.0%)
주택구입	1,698	14,314	9,339	3,894	520	29,765 (54.4%)
주거임차	1,915	6,941	4,025	1,721	268	14,870 (27.2%)
장기요양	3	520	955	660	110	2,280 (4.2%)
파산선고	11	77	66	56	15	225 (0.4%)
회생절차	597	2,819	2,551	978	87	7,032 (12.9%)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주: 해지율 = 당해 해지인원수/당해 이전인원수

퇴직연금 급여 현황

- (원인 2) 수급 시 연금과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고, 퇴직소득**공제율이 높아** 일시금 수령 유인 높음
 - 현행 퇴직소득공제율은 50.3%, 퇴직일시금의 실효퇴직소득세율은 4.4%

- (원인 3) 퇴직연금 시행 기간이 18년(2005년 2월~)으로 **충분한 연금자산 확보에 한계**
 - 2005년 12월 부터 시행되어 고소득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금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함

- (원인 4) 연금수령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 퇴직소득세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 제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퇴직연금소득이 포함되도록 되어 연금화 유인에 한계 (감사원 지적 사항)

- (원인 5) **장수리스크** 등으로 인한 상품공급자의 부담도 적극적 연금화 유도에 한계

퇴직연금 평가 (종합)

현 퇴직연금 수급대상자(55세 이상)의 소득대체율 2.1% (대상자 약 39만 7천 명, '21년 기준)

- 연금수령자 16.4% (대상자의 4.3%), 일시금 수령자 1.4% (대상자의 95.7%)

현 퇴직연금 수급의 소득대체율 추정

구분		산출방법	소득대체율
퇴직급여 수급	연금(4.3%, 1만 7천건)	{1억 8,900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16.4%
	일시금(95.7%, 38만건)	{1,600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1.4%
	전체 (39만 7천건)	{2,400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2.1%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90만 건)		{1,519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1.3% * △5.2%~△6.5% (△1.3%×4~5회)

주: 2021년 기준 55세 이상 수급대상자, 수급기간 25년 (가정), 투자수익률 3%(할인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키리리포트, 보험연구원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화

1. 퇴직연금 연금화 : 제도적 특징
2. 퇴직연금 연금화 사례
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퇴직연금 연금화 : 제도적 특징

- 국가마다 퇴직연금 연금화 운영 유형이 다양하나, **공공성 강할수록 종신연금화 경향**
-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강제 연금화, 스위스, 칠레 등은 준 강제형 연금화

주요국의 퇴직연금 수급형태 및 연금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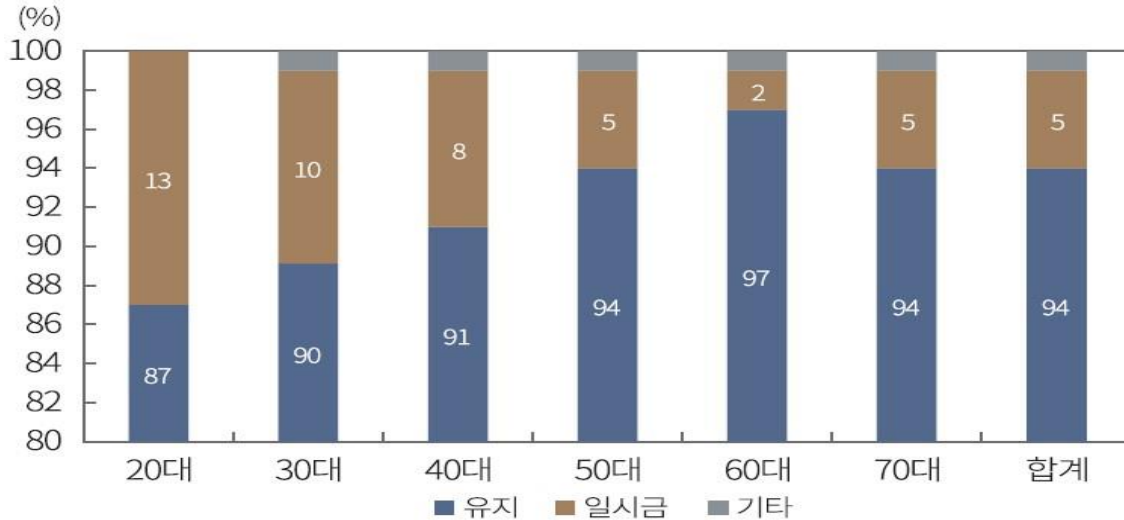
국가	종신연금(Lifetime annuities)	정기인출(Income drawdown products)	일시금(Lump sums)
호주	가능 (수요 미미)	가능	가능(선택율 높음)
뉴질랜드	가능 (연금공급자 없음)	가능	가능(선택율 높음)
미국	가능 (수요 미미)	가능(선택율 높음)	가능
스위스	기본 옵션, 보조금 지급	불허	가능, 은퇴 시점 3년 전에 의사 표시
덴마크	무제한 연기연금	제한적	가능(선택율 높음)
네덜란드	강제	불허	불허
싱가포르	강제	불허	불허
칠레	기본 옵션, 보조금 지급	제한적 프로그램 인출	불허
영국	가능	가능(선택율 높음)	가능, 적립금의 25%까지 초과세
노르웨이			불허
스웨덴	가능, 65세부터 수령 시 종신연금	가능, 61~65세 사이에 정기 인출 선택 가능	불허
한국	가능	-	가능

자료 스웨덴: SPV, Understand your pension(<https://www.spv.se/en/about-your-pensions/understand-your-pension/>) 미국, 스위스, 영국: 강성호, 이소양(2022), 주요국 퇴직연금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참조

퇴직연금 연금화 사례 : 미국

- (중과세 & 패널티) 일시금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패널티 부과로 **일시금 수령 유인을 억제**
 - 일시금 수령 시 **누진종합소득세 적용***, 59.5세 이전 조기 인출 시 **10% 패널티** 적용 (미국)
 - *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이러한 영향으로 **퇴직연령에 가까울수록, 적립금 비중이 높을수록** 일시금 비중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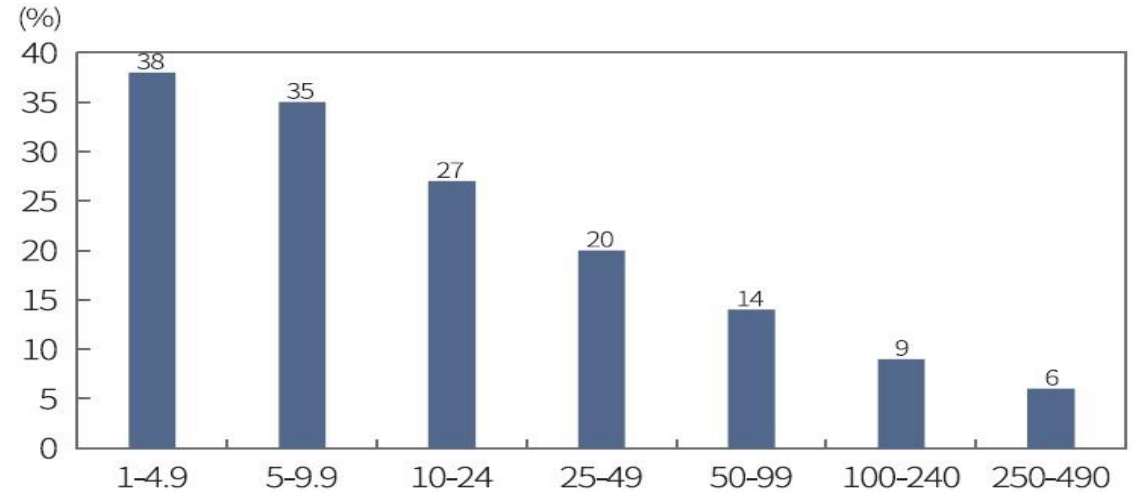
미국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수령 비중



주: 연령총별 연금자산 잔액 기준 분배

자료: Vanguard(2020), 송홍선(2022) 재인용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보유잔액별 일시금 수령 비중



주: X축은 퇴직연금 개인계좌 보유잔액 구간이며, 단위는 천 달러임

자료: Vanguard(2020), 송홍선(2022) 재인용

퇴직연금 연금화 사례 : 영국

- (중과세 & 지급방식 다양) 일시금 수령 시 중과세, 지급방식의 다양화로 **일시금 수령 유인을 억제**
 - 퇴직연금 적립금의 25%이상에 대해 **누진종합소득세율** 적용(20~45%), 55세 이전 조기인출 시 **55% 세율** 적용
 - **지급방식의 다양화***로 2015년 pension freedom 이후에도 일시금은 10.9% 수준을 유지

* 연금수령, 정기인출(Drawdown), 수시인출(UFPLS), 일시금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패널티

국가	인출가능 연령	중도인출 시 패널티 등
미국	59.5세	10% 가산세
영국	55세	55% 세율
캐나다	55세	특정사유 외 금지
호주	60세	특정사유 외 금지
네덜란드	68세	조기수령 1년마다 7%씩 감액
스위스	-	부동산 구입, 모기지 대출 상환 하는 경우 조기인출 가능하나, 주택 팔 경우 다시 연금으로 회수함

자료: 최경진(2015),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근로복지공단; 강성호·류건식·김동경 (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정창률 (2023), 퇴직연금의 역할과 과제: 시장창출, 시장수정, 시장보상의 관점에서, 한국연금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

(단위: 천 개, 억 파운드)

구분		'18.10~'19.3	'19.4~9	'19.10~'20.3	'20.4~9	'20.10~'21.3
연금수령	계좌	36(11.4)	38(10.8)	31(9.8)	29(9.9)	32(10.3)
	금액	22(11.2)	23(11.0)	18(9.8)	19(11.7)	22(10.4)
정기인출	계좌	98(31.0)	102(28.5)	95(30.1)	75(25.8)	91(29.7)
	금액	136(70.0)	147(69.9)	135(71.6)	114(68.9)	145(69.6)
수시인출	계좌	13(4.2)	15(4.3)	16(5.1)	13(4.5)	15(5.0)
	금액	14(7.2)	15(7.3)	14(7.4)	11(6.9)	19(9.1)
일시금인출	계좌	169(53.4)	201(56.4)	174(55.0)	173(59.8)	168(54.9)
	금액	22(11.5)	25(11.8)	21(11.1)	21(12.5)	23(10.9)
합계	계좌	316(100.0)	356(100.0)	316(100.0)	290(100.0)	306(100.0)
	금액	194(100.0)	210(100.0)	188(100.0)	165(100.0)	20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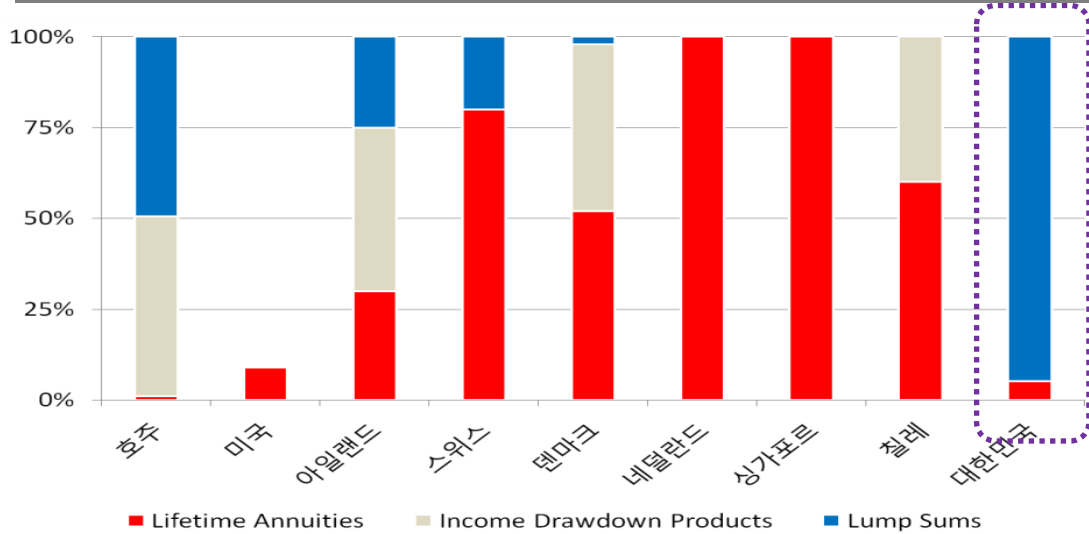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수령 계좌와 금액 기준 비중을 의미함

자료: 영국 금융감독청(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

퇴직연금 연금화 사례 : 네덜란드, 스위스

- (연금화 강제) 연금형태의 수령을 **강제화 혹은 원칙화로 제도 설계**
 - 네덜란드는 연금형태 수령을 의무화, 조기수령 시(68세 이전) **1년마다 7% 감액**
 -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의 수령하도록 하는 준강제형 연금화, 숙려제도** 운영
- * 연금수령액 수준은 적립금 규모와 최소전환율(2022년 6.8%)에 따라 결정됨
 **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은퇴시점 3년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함 (일본도 유사한 제도 있음)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국제비교



주: 우리나라의 경우 DC형과 DB형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적임
 자료: Oxaera(2015)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및 일시금 수령 비중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금수령	금액	28,781	29,502	30,164	30,801	31,515
	비중	79	78.2	77.1	75.6	74.2
일시금수령	금액	7,664	8,228	8,981	9,915	10,949
	비중	21	21.8	22.9	24.4	25.8
합계	금액	36,445	37,730	39,145	40,716	42,464
	비중	100	100	100	100	100

자료: 스위스연방사회보험청(FSIO)(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_accordion_1669082241705)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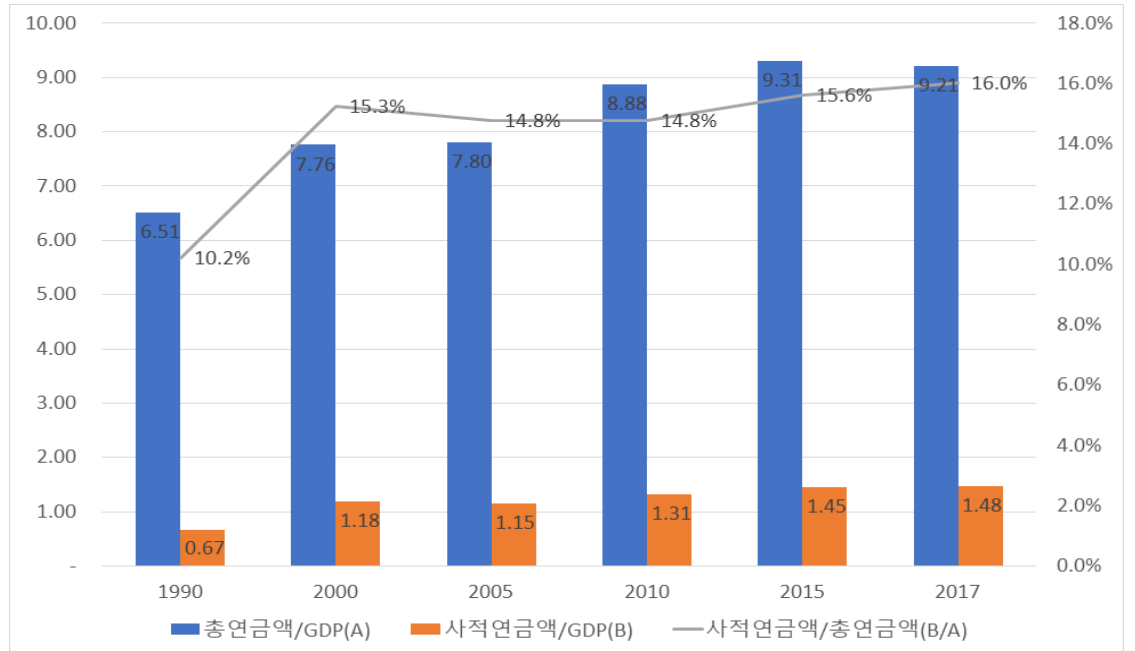
- 이러한 연금화를 통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증가, 사적연금 비중(10.2%→16.0%)도 높음
-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각각 50.5%, 40.5%, 42.1% (우리나라 40년 가입 시 13.3%)

다층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국제 비교

국가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합계(1층+2층)
캐나다	38.8 (10.5)	24.5*	63.3
덴마크	29.5 (12.8)	50.5	80
독일	41.5 (18.6)	14.1*	55.6
일본	32.4 (18.3)	23.1*	55.5
네덜란드	29.2 (25.1)	40.5	69.7
스웨덴	41.3 (22.3)	12.0	53.3
스위스	22.1 (17.0)	22.1	44.2
영국	21.6 -	27.4	49.0
미국	39.2 (10.6)	42.1*	81.3
OECD	42.2 (18.2)	15.4*	57.6
한국	31.2 (9.0)	-25년 가입 8.3% (40년 13.3%) -25년 가입+추납 시 10%~16%	-25년 가입 39.5% (40년 44.5%) -25년 가입+추납 시 41.2%~47.2%

주: 1) ()안은 공적연금 보험료율, 2) *는 OECD(2022)에서 정의하는 자발적 사적연금을 포함,
3) 한국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 제570호' 추정치를 인용함. 자료: OECD(2022), Pension at Glance 2021, p.141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적연금 비중 추이



주: 총연금액은 공적연금액과 사적연금액을 합산한 것임(노령 및 유족연금을 포함)

자료: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IV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1. 퇴직연금 연금화 효과
2.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퇴직연금 연금화 효과

- **현 미래 수급대상자(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연금 10.1%**(수급기간 25년)
- **가입기간 40년, 25년 총실히 가입 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3.3%, 8.3%** (수급기간 25년)
 - 보험료 8.3%→ 10%, 13%, 16% 증가시 소득대체율 8.3%→ 10.0%, 13.0%, 16.0% (수급기간 25년)
 - DC형 에서 소득대체율은 투자수익률에 크게 영향 받으므로 **적립금 운용**이 매우 중요함

미래 퇴직연금 수급자(현 가입자, 43.4세) 소득대체율

구분		산출방법	소득대체율
퇴직연금 가입자 (684만명)	기 적립금	{4,315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3.8%
	추가적립금	{(730만원×10년)/25년/12개월}/383만원	6.4%
	소계	-	10.1%
IRP 추가가입 (129만명)	기 적립금	{938만 원/25년/12개월}/383만 원	0.8%
	추가적립금	{(505만원×10년)/25년/12개월}/383만원	4.4%
	소계	-	5.2%
전체(700만명)		-	15.3% (10.1% + 5.2%)

주: 현 가입자 대상(43.4세), 추가가입기간 10년, 수급기간 25년(가정), 투자수익률 3%(할인률과 동일)
 자료: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키리리포트,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퇴직급여+본인부담)	가입기간 40년		가입기간 25년	
8.3% (현행)	13.3	-	8.3	-
10% (1.7%p↑)	16.0	(2.7↑)	10.0	(1.7↑)
13% (4.7%p↑)	20.8	(7.5↑)	13.0	(4.7↑)
16% (7.7%p↑)	25.6	(12.3↑)	16.0	(7.7↑)

주: 1) 투자수익률 3%, 수급기간은 25년 가정
 2) ()안은 보험료를 8.3% 대비 보험료를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이 값임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생애기간 연금화 전략

- (생애단계별 전략)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생애기간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관리될 필요
 - 가입·유지단계에서 자동가입, 적립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 수급단계에서 연금화를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지급방식이 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관제도 연계) 실업수당,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관련 제도와 유기적 연계** 필요

가입/유지 단계 전략

-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수령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이직 후 해지할 수 없도록** 제도 강제화, 세제개편 등이 요구됨
- 55세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 못하도록 제도화함 (긴급 자금 필요 시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퇴직소득**공제율 축소**) 혹은 **패널티**를 부과 => 발생재원은 연금화에 활용

수급 시 연금화 전략

-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을 도입
 - * 퇴직연금 종신연금화를 의무화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참고
- 연금수령기준 조정*,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한 연금화 전환
 - * 정년 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 **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

감사합니다.